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16다205908 손해배상등  
원고, 피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신인수, 권두섭, 조세화, 김세희  
피고, 상고인 1. 케이티 노동조합  
대표자 김해관  
2. 정윤모  
3. 한호섭  
피고들 주소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고헌철, 이인재, 이정한, 장상균, 이욱래, 구교용, 정용재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12. 16. 선고 2015나2026878 판결  
판 결 선 고 2018. 7. 26.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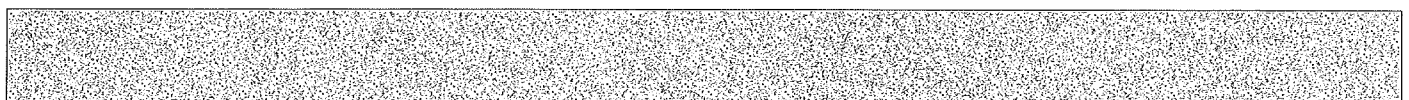
###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항에 관한 합의를 문서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날인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그 합의가 반드시 정식의 단체교섭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에 관한 합의가 노사협의회 합의의 협의를 거쳐서 성립되었다고, 당사자 쌍방이 이를 단체협약으로 할 의사로 문서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의 대표자가 각 노동조합과 사용자를 대표하여 서명날인 하는 등으로 단체협약의 실질적·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다면 이는 단체협약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3다27429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각 노사합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 및 이 사건 규약 등에서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한 단체협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단체협약의 의미와 이 사건 규약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2. 상고이유 제2, 3점에 관하여





가.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노동조합법 제22조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균등하게 그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의 개개 조합원의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을 직접 결정하는 규범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단체협약의 실질적인 귀속주체는 근로자이고, 따라서 단체협약은 조합원들이 관여하여 형성한 노동조합의 의사에 기초하여 체결되어야 하는 것이 단체교섭의 기본적 요청이다. 노동조합법 제16조 제1항 제3호는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하여 노동조합 대표자가 단체교섭 개시 전에 총회를 통하여 교섭안을 마련하거나 단체교섭 과정에서 조합원의 총의를 계속 수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그리하여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의 의사를 반영하고 대표자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업무 수행에 대한 적절한 통제를 위하여 규약 등에서 내부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등 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한의 행사를 절차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그것이 단체협약 체결권한을 전면적·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닌 이상 허용된다(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0다24534 판결 참조).

이러한 헌법과 법률의 규정, 취지와 내용 및 법리에 비추어 보면,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위와 같이 조합원들의 의사를 결집·반영하기 위하여 마련한 내부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한 채 조합원의 중요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에 관하여 만연히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그 단체협약의 효력이 조합원들에게 미치게 되면, 이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조합원의 단결권





또는 노동조합의 의사 형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원심은 이 사건 규약이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을 조합원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고, 대표자로 하여금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단체협약을 체결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전제하였다. 이후 피고 노동조합의 대표자인 피고 정운모 등이 총회의 의결을 통해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채 특별명예 퇴직 및 임금피크제 시행, 복지제도변경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각 노사합의를 체결한 것은 이 사건 규약을 위반하여 노동조합의 의사 형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조합원들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다.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

### 3.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불법행위로 입은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액수는 사실심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다22808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그와 같이 산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위자료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 4. 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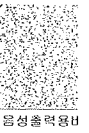


음성출력음반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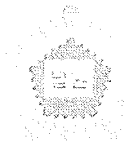
재판장	대법관	김재형	<u>김재형</u> 
주심	대법관	김창석	<u>김창석</u> 
	대법관	조희대	<u>조희대</u> 
	대법관	민유숙	<u>민유숙</u> 





## 원고 명단

1. 박철우  
서울 노
2. 오현경  
서울 중
3. 엄장용  
서울 중
4. 박철구  
서울 동
5. 박찬길  
서울 관
6. 강세구  
서울 동
7. 강관수  
인천시
8. 황운곡  
서울 강
9. 홍성태  
서울 중
10. 현만주  
서울 노



- 11. 허진  
서울 성
- 12. 한승안  
순천시
- 13. 한병욱  
부산시
- 14. 한범석  
서울 광
- 15. 한미희  
청주시
- 16. 한덕길  
제주시
- 17. 탁원석  
서울 강
- 18. 최학규  
서울 강
- 19. 최정현  
서울 상
- 20. 최재성  
서울 강
- 21. 최원섭



- 파주시
- 22. 최원규
- 경남 의
- 23. 최연호
- 수원시
- 24. 최상점
- 대구시
- 25. 최상의
- 대전시
- 26. 최규옥
- 강릉시
- 27. 천항의
- 부산시
- 28. 채명원
- 서울 노
- 29. 지식명
- 청주시
- 30. 조지환
- 서울 양
- 31. 정현수
- 남양주시





음성출력용QR

32. 정정식

대구시

33. 정연용

서울 성

34. 전창욱

대구시

35. 전중수

김포시

36. 전은복

속초시

37. 전영창

대전시

38. 장현일

서울 노

39. 임병석

서울 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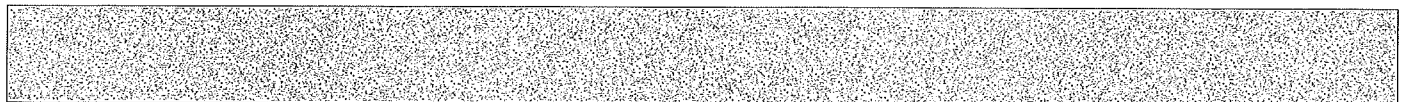
40. 이호정

시흥시

41. 이태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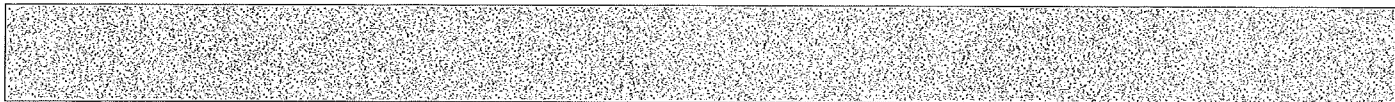
서울 중

42. 이종복





- 공주시
- 43. 이정환
- 울산시
- 44. 이재숙
- 서울 서
- 45. 이재선
- 광명시
- 46. 이재덕
- 강릉시
- 47. 이원준
- 서울 마
- 48. 이우현
- 서울 성
- 49. 이용대
- 대전시
- 50. 이영주
- 수원시
- 51. 이영식
- 안양시
- 52. 이양복
- 용인시





53. 이석정

대전시

54. 이석권

용인시

55. 이상호

서울 송

56. 이상현

안양시

57. 이상을

고양시

58. 이봉열

수원시

59. 이병천

안양시

60. 이백우

부산시

61. 이래욱

논산시

62. 이남규

고양시

63. 이남구



광명시

64. 이기국

서울 강

65. 이경민

서울 노

66. 이건일

서울 마

67. 윤성남

강릉시

68. 윤상덕

대구시

69. 윤삼철

울산시

70. 유재은

서울 송

71. 유승택

청주시

72. 위몽룡

강원도

73. 원혜숙

서울 강



74. 우준석

대전시

75. 오진규

성남시

76. 오성집

제주 서

77. 오석훈

고양시

78. 여운만

춘천시

79. 양해택

군포시

80. 양상모

천안시

81. 양병길

영천시

82. 심엽

대구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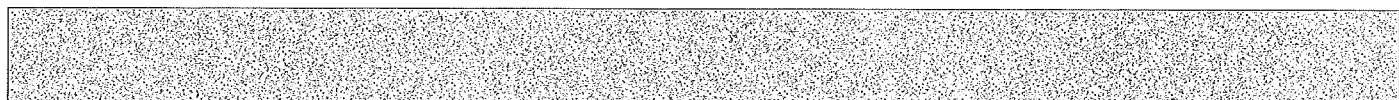
83. 신영찬

보령시

84. 신상호



- 성남시
- 85. 신덕경
- 하남시
- 86. 송준필
- 울산시
- 87. 송우진
- 천안시
- 88. 송우영
- 서울 영
- 89. 송영세
- 청주시
- 90. 송병호
- 의정부시
- 91. 송길영
- 청주시
- 92. 송기보
- 서울 노
- 93. 손정수
- 부산시
- 94. 설재두
- 전주시





95. 석윤일

부산시

96. 서용석

서울 은

97. 서오환

서울 잉

98. 서영봉

부산시

99. 방희석

당진시

100. 박진태

서울 은

101. 박제역

서울 은

102. 박인수

포항시

103. 박승식

서울 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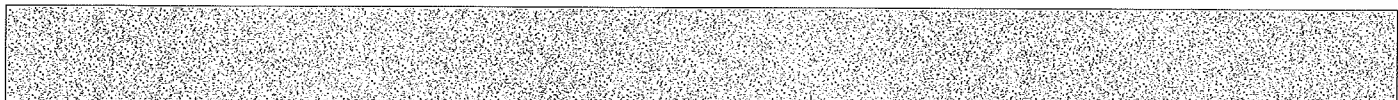
104. 박수호

안양시

105. 박동희



- 경남 1
- 106. 박동호  
포항시
- 107. 박경중  
포항시
- 108. 박경득  
남양주
- 109. 민백기  
서울 2
- 110. 문월식  
광주시
- 111. 매경진  
남양주
- 112. 류방상  
서울 2
- 113. 남기달  
천안시
- 114. 김형준  
인천시
- 115. 김형웅  
충남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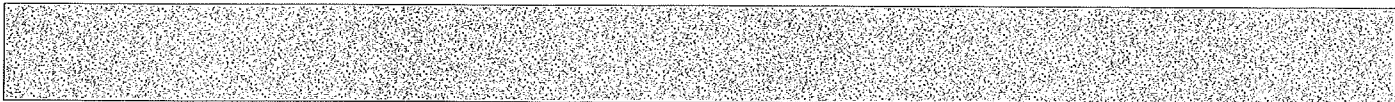




- 116. 김형봉  
인천시
- 117. 김혁진  
전주시
- 118. 김태호  
서울 강
- 119. 김태우  
진주시
- 120. 김치훈  
제주시
- 121. 김철태  
창원시
- 122. 김진구  
서울 강
- 123. 김종우  
대전시
- 124. 김종백  
고양시
- 125. 김정식  
부산시
- 126. 김정수



- 부산시
- 127. 김정기
- 강릉시
- 128. 김재현
- 대전시
- 129. 김재영
- 안양시
- 130. 김장현
- 전북 부
- 131. 김은숙
- 경북 울
- 132. 김용광
- 충북 음
- 133. 김왕진
- 성남시
- 134. 김영용
- 강릉시
- 135. 김애자
- 서울 서
- 136. 김수현
- 서울 강





음성출력용U

- 137. 김석균  
서울 서
- 138. 김생연  
대구 북
- 139. 김동훈  
서울 서
- 140. 김동창  
서울 영
- 141. 김규화  
전주시
- 142. 김건화  
용인시
- 143. 기중권  
대구시
- 144. 금순희  
서울 노
- 145. 권용채  
안산시
- 146. 권영환  
의왕시
- 147. 구본경





- 서울 동
- 148. 광재복
- 청주시
- 149. 광재덕
- 대구 달
- 150. 공영묘
- 부산시
- 151. 공규식
- 의왕시
- 152. 고희주
- 광명시
- 153. 고용호
- 서울 동
- 154. 고희택
- 제주시
- 155. 강희진
- 서산시
- 156. 강승구
- 부산시
- 157. 강석영
- 서울 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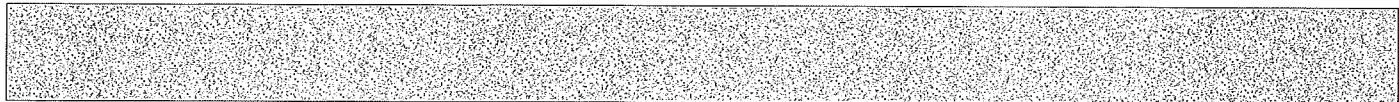




- 158. 황인성  
전주시
- 159. 황원구  
강릉시
- 160. 황대욱  
대구시
- 161. 표지현  
남양주시
- 162. 최용규  
전주시
- 163. 최병수  
파주시
- 164. 조성길  
대전시
- 165. 조계영  
순천시
- 166. 정종호  
성남시
- 167. 전종일  
화성시
- 168. 전기훈



- 고양시
- 169. 장훈혁
- 경북 의
- 170. 이효숙
- 서울 양
- 171. 이형락
- 경북 영
- 172. 이현동
- 부산시
- 173. 이천덕
- 인천시
- 174. 이정은
- 서울 성
- 175. 이용철
- 서울 영
- 176. 이심화
- 부산시
- 177. 이승희
- 구미시
- 178. 이성민
- 서울 동





179. 이병한

문경시

180. 이금준

보령시

181. 윤종삼

경남 합

182. 육종하

충남 금

183. 오현국

전남 완

184. 양현철

과천시

185. 안종식

부산시

186. 신동길

춘천시

187. 송기웅

용인시

188. 서우석

성남시

189. 부철호





- 제주시
- 190. 백성귀  
울산시
- 191. 박홍도  
고양시
- 192. 박종애  
청주시
- 193. 박용주  
고양시
- 194. 박옥현  
전북 부
- 195. 박시우  
고양시
- 196. 박미란  
성남시
- 197. 민범기  
부산시
- 198. 민락기  
서울 송
- 199. 명경석  
김포시







음성출력용QR

- 200. 나진두  
서울 강
- 201. 김태영  
김포시
- 202. 김철기  
고양시
- 203. 김진성  
광주시
- 204. 김종수  
인천시
- 205. 김종섭  
용인시
- 206. 김종구  
밀양시
- 207. 김정이  
대전시
- 208. 김정도  
대전시
- 209. 김의한  
원주시
- 210. 김영주



- 파주시
- 211. 김연태
- 서울 강
- 212. 김승한
- 구미시
- 213. 김송삼
- 부산시
- 214. 김성배
- 용인시
- 215. 김명기
- 부산시
- 216. 김근효
- 대전시
- 217. 김근택
- 대전시
- 218. 구자운
- 서산시
- 219. 고운성
- 고양시
- 220. 고상우
- 제주시



음성출력용바

221. 고기철

제주시

222. 강희옥

전주시

223. 강택용

제주시

224. 강윤경

안동시

225. 강연백

제주시

226. 강순안

고양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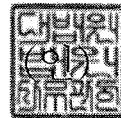
음성출력용QR

# 정본입니다.

2018. 7. 26.

대법원

법원사무관 신우탁



※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번호조회 메뉴를 이용하거나, 담당 재판부에 대한 문의를 통하여 이 문서 하단에 표시된 발급번호를 조회하시면, 문서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